

1. 개정이유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별도 없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중 “2종 압력용기”를 “압력용기”로 한다.

제31조의26의 제목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을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 및”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자격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동일 검사대상기기에 교대근무 등의 사유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표 3의9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27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대근무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통제·관리설비”를 “별표 3의11에서 정한 중앙감시·관리설비”로 한다.

제31조의29부터 제31조의31까지를 각각 제31조의31부터 제31조의33까지로 하고, 제31조의28을 제31조의29로 하며, 제31조의28 및 제31조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에 관한 업무
2. 검사대상기기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3. 검사대상기기의 운전·조작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검사대상기기의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
5.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의 작성·보관
6.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신청 등에 관한 행정업무
7.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검사대상기기가 가동 중인 경우 선임 구역 내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매일 1회이상 검사대상기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직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점검한 후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운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0(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31조의28에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대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
다.

제33조제2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 및 제26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 이행에 관한
사항

2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부터 3의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9부터 3의10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u>2종 압력용기</u>	5. ----- ----- ----- <u>압력용기</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6(<u>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u>)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u>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u> 는 별표 3의9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의26(<u>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 등</u>) ① ----- ----- <u>검사대상기기관리자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자격과</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동일 검사대상기기에 교대근무 등의 사유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u>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신 설>

는 경우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표 3의9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

----- 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대근무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

----- 별표 3의11에서 정한 중앙감시·관리설비
-----.

-----.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험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에 관한 업무

2. 검사대상기기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3. 검사대상기기의 운전·조작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검사대상기기의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

5.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의 작성·보관

6.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신청 등에 관한 행정업무

7.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검사대상기기가 가동 중인 경우 선임 구역 내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매일 1회이상 검사대상기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직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u>제31조의28</u> (생략) <u><신설></u> <u>제31조의29</u> ~ <u>제31조의31</u> (생략)	<u>아니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점검한 후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운전·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u> <u>제31조의29</u> (현행 제31조의28과 같음) <u>제31조의30(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31조의28에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대행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u> <u>제31조의31 ~ 제31조의33</u> (현행 제31조의29부터 제31조의31까지와 같음)
---	--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략)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1. ~ 23. (생략)	1. ~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 이행에 관한 사항</u>
<u>24. (생략)</u>	<u>25. (현행 제24호와 같음)</u>
<u><신 설></u>	<u>2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열사용기자재 (제1조의2 관련)

구분	기기명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여러 관이 붙어 있는 용기)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초과 10㎡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2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 소형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가정용 화목보일러는 제외한다.
	소형 온수보일러	전열면적이 14㎡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0.2326MW) 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 만 해당한다.
	축열식 전기보일러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 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기기의 사용조 건 및 성능의 범위)소비전력이 0.03MW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
	캐스케이드 보일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 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2대 이상이 단일 연통으 로 연결되어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되며, 최대 가스사 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0.2326MW)를 초 과하는 것
	가정용 화목보일러	화목(火木) 등 목재연료를 사용하여 90℃ 이하의 난 방수 또는 65℃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표 시 난방출력이 0.07MW 이하로서 옥외에 설치하는 것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집열기	
압력용 기	1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m³)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 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 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넘는 것
	2중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부 부피가 0.04m^3 이상인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mm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mm 초과)이고, 그 길이가 1,000mm 이상인 것
요로 (窯爐: 고온가 열장치)	요업요로	연속식유리용융가마 ·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 · 유리용융도가니가마 · 터널가마 · 도염식가마 · 셔틀가마 · 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금속요로	용선로 · 비철금속용융로 · 금속소둔로 · 철금속가열로 및 금속균열로

[별표 3의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범위(제31조의5 관련)

구분	<u>기기명</u>	설치·시공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u>소형 온수보일러</u>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집열기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u>요로</u>	<u>요업요로</u> <u>금속요로</u>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u><삭제></u>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구분	기기명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며, 길이가 600㎜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이하인 것 3. 2중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5. <u>진공온수보일러</u>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u>0.2326MW</u>)를 초과하는 것
	캐스케이드 보일러	별표 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 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u>금속요로</u>	<u>철금속가열로로서 정격용량이 0.5815MW를 초과하는 것</u>

[별표 3의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

검사의 종류		적용대상	근거 법조문
제조검사	용접검사	동체·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구조검사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 등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개조검사		<u>설치검사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u>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가열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설치장소 변경검사		<u>설치검사 후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u>	법 제39조제2항제2호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법 제39조제4항
	운전성능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별표 3의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검사의 종류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분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 년
개조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 년
설치장소 변경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 년
재사용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 년
계속사용검 사	안전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 2년
	운전성능검사	1. 보일러: 1년 2. 철금속가열로: 2년

비고

1.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
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제외한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4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2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 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6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같은 표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4년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발생설비 중 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2년

5. 제31조의25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검사대상기기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한다(비고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최대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제외한다.

[별표 3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 (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m^2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m^2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	용접검사
	주철제 보일러	구조검 사
	1.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2. 전열면적 30m^2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설치검사
	1. 전열면적 5m^2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mm 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水頭壓: 압력을 물기둥의 높이로 표시하는 단위)이 5m 이하이며 안지름이 25mm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m^2 이하인 것 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kg/h (도시가스는 0.2326MW)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	제조검사

캐스케이드 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제조검사
1종 압력용 기, 2종 압력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m³)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 이하인 것	용접검 사
	1.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m³)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MPa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4.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설치검사 및 계속 사용검사
<u>금속요로</u>	철금속가열로	제조검사, 재사용검 사 및 계 속사용검 사 중 안 전검사

[별표 3의9]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및 직무대행자의 자격과 관리범위

(제31조의26제1항 및 제31조의26제3항 관련)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구분	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
가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나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다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라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0.5815MW 이하인 것 3. 1종 압력용기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0.6978MW를 1t/h로 본다.
2.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3.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제31조의26제3항에 따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관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5.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위 표 또는 비교 4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 직무대행자

자 격	관 리 범 위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모든 검사대상기기

비고 : 제1호라목의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비고2에 따른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이 10t/h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감시·관리설비 요건 (제31조의27제2항 관련)

설비요건	
1. 중앙감시·관리설비란 원격으로 보일러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즉시 경보 및 긴급정지가 가능하여 안전하게 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앙감시실은 중앙감시·관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상시 근무할 것. 단, 제31조의28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점검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보일러 설치 현장에 10분 이내 도착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전용의 이동수단을 갖추는 것 라. 검사대상기기 점검 또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3. 중앙감시실에는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설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기능	세부내용
가. 감시·확인	1) 보일러 설치 현장에 불필요한 출입자 통제 관리와 보일러 태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2) 디지털 표시장치를 통해 다음 사항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단, 디지털 값으로 송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 계측장치(압력계, 수위계, 온도계, 유량계, 수면계) 나) 연소장치(버너, 송풍기) 다) 급수장치(급수펌프, 급수처리) 라) 자동제어장치(가동 및 정지, 연소 상태, 수위 상태, 배기 온도 상태, 압력 상태)
나. 경보	자동제어장치에 이상이 감지되는 경우 경보를 발할 수 있을
다. 긴급정지·가동	1) 자동제어장치에 이상이 감지되는 경우 자동 및 수동으로 를 긴급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것 가) 자동 정지 : 보일러가 자동으로 연료 또는 전원을 차단 나) 수동 정지 :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중앙감시·관리설비로 연료 전원을 차단 2) 다음의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 현장에서만 가동이 가능할 가) 긴급정지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한 후 재가동 나) 보일러 초기 가동 및 정지 후 재가동
4. 중앙감시·관리설비 요건에 관한 확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제34조제3항 관련)

1.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신청 구분	용 량	수수료(원)
<u>강철제 보일러 + 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u>	0.5t/h 미만	45,800
	0.5t/h 이상 1.0t/h 미만	66,400
	1.0t/h 이상 1.5t/h 미만	87,000
	1.5t/h 이상 2.0t/h 미만	111,900
	2.0t/h 이상 2.5t/h 미만	135,900
	2.5t/h 이상 3.0t/h 미만	141,400
	3.0t/h 이상 3.5t/h 미만	147,300
	3.5t/h 이상 4.0t/h 미만	150,500
	4.0t/h 이상 4.5t/h 미만	151,400
	4.5t/h 이상 5.0t/h 미만	153,200
	5.0t/h 이상 6.0t/h 미만	154,200
	6.0t/h 이상 7.0t/h 미만	156,300
	7.0t/h 이상 8.0t/h 미만	157,400
	8.0t/h 이상 10t/h 미만	159,300
	10t/h 이상 15t/h 미만	170,600
	15t/h 이상 20t/h 미만	183,100
	20t/h 이상 30t/h 미만	192,100
	30t/h 이상 40t/h 미만	201,600
	40t/h 이상 60t/h 미만	221,600
	60t/h 이상 80t/h 미만	223,400
	80t/h 이상 100t/h 미만	224,200
	100t/h 이상	225,100
<u>압력용기</u>	0.5m³ 미만	37,200
	0.5m³ 이상 1m³ 미만	38,400
	1m³ 이상 5m³ 미만	44,100
	5m³ 이상 10m³ 미만	49,000
	10m³ 이상	60,900
<u>철금속가열로</u>	0.58MW 초과 1.16MW 이하	63,000
	1.16MW 초과 5.82MW 이하	71,500
	5.82MW 초과 11.63MW 이하	77,800
	11.63MW 초과	84,1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분

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m³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60,900원에 50m³마다 8,1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신청 구분	용 량	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 + 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0.5t/h 미만	52,100
	0.5t/h 이상 1.0t/h 미만	75,700
	1.0t/h 이상 1.5t/h 미만	99,100
	1.5t/h 이상 2.0t/h 미만	127,400
	2.0t/h 이상 2.5t/h 미만	154,800
	2.5t/h 이상 3.0t/h 미만	161,000
	3.0t/h 이상 3.5t/h 미만	171,400
	3.5t/h 이상 4.0t/h 미만	175,000
	4.0t/h 이상 4.5t/h 미만	176,100
	4.5t/h 이상 5.0t/h 미만	178,200
	5.0t/h 이상 6.0t/h 미만	179,300
	6.0t/h 이상 7.0t/h 미만	181,800
	7.0t/h 이상 8.0t/h 미만	183,100
	8.0t/h 이상 10t/h 미만	185,300
	10t/h 이상 15t/h 미만	202,300
	15t/h 이상 20t/h 미만	217,200
	20t/h 이상 30t/h 미만	227,800
	30t/h 이상 40t/h 미만	239,000
	40t/h 이상 60t/h 미만	262,800
	60t/h 이상 80t/h 미만	265,000
	80t/h 이상 100t/h 미만	265,800
	100t/h 이상	267,000
압력용기	0.5m ³ 미만	42,300
	0.5m ³ 이상 1m ³ 미만	43,800

	<u>1m³ 이상</u>	<u>5m³ 미만</u>	<u>51,300</u>
	<u>5m³ 이상</u>	<u>10m³ 미만</u>	<u>57,000</u>
		<u>10m³ 이상</u>	<u>72,300</u>
<u>철금속가열로</u>	<u>0.58MW 초과</u>	<u>1.16MW 이하</u>	<u>73,300</u>
	<u>1.16MW 초과</u>	<u>5.82MW 이하</u>	<u>83,100</u>
	<u>5.82MW 초과</u>	<u>11.63MW 이하</u>	<u>90,500</u>
		<u>11.63MW 초과</u>	<u>97,900</u>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m³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72,300원에 50m³마다 9,5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3. 2016년 1월 1일부터

<u>구분</u>	<u>용 량</u>		<u>수수료(원)</u>
<u>보일러</u>		0.5t/h 미만	58,500
	0.5t/h 이상	1.0t/h 미만	84,900
	1.0t/h 이상	1.5t/h 미만	111,200
	1.5t/h 이상	2.0t/h 미만	143,000
	2.0t/h 이상	2.5t/h 미만	173,700
	2.5t/h 이상	3.0t/h 미만	180,700
	3.0t/h 이상	3.5t/h 미만	195,400
	3.5t/h 이상	4.0t/h 미만	199,600
	4.0t/h 이상	4.5t/h 미만	200,800
	4.5t/h 이상	5.0t/h 미만	203,200
	5.0t/h 이상	6.0t/h 미만	204,500
	6.0t/h 이상	7.0t/h 미만	207,300
	7.0t/h 이상	8.0t/h 미만	208,700

	8.0t/h 이상	10t/h 미만	211,300
	10t/h 이상	15t/h 미만	234,000
	15t/h 이상	20t/h 미만	251,200
	20t/h 이상	30t/h 미만	263,500
	30t/h 이상	40t/h 미만	276,500
	40t/h 이상	60t/h 미만	304,000
	60t/h 이상	80t/h 미만	306,500
	80t/h 이상	100t/h 미만	307,500
		100t/h 이상	308,900
압력용기		0.5m³ 미만	47,500
	0.5m³ 이상	1m³ 미만	49,200
	1m³ 이상	5m³ 미만	58,500
	5m³ 이상	10m³ 미만	65,000
		10m³ 이상	83,600
<u>요금</u>	<u>0.5815MW</u> 초	<u>1.163MW</u> 이하	83,500
		과 <u>5.815MW</u> 이하	94,800
	<u>1.163MW</u> 초과	11.63MW 이하	103,200
	<u>5.815MW</u> 초과	11.63MW 초과	111,6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0.6978MW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m³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83,600원에 50m³마다 10,8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용접 [] 구조 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검사대상 기기명	형식	
	용량	최고사용압력	MPa (kgf/cm ²)
	검사 요청일	원자재검사 성적서번호	
	최초 신청일	검사증번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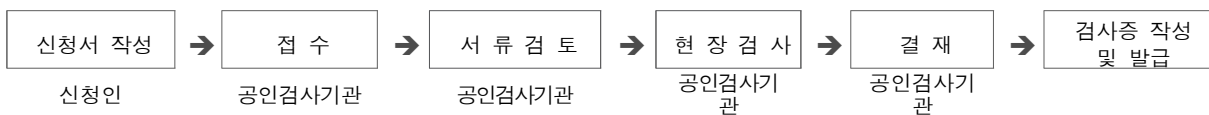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용접검사 가. 용접 부위도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2. 구조검사: 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않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첨부하고,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치검사
[] 개조검사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재사용검사
[] 계속사용검사
[] 검사연기

검사대상기기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검사대상 기기	기 기 명	제 조 자 명	
	설 치 구 역	(전화번호)	검사증번호
	형 식	전열면적	용 량
	최고사용압력	버너종류	사용연료
검사대상 기기관리 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 종류	자격증번호	
시공업자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개조 여부 ([] 예, [] 아니오) 장소변경 여부([] 예, [] 아니오)

검사 요청일	년 월 일	연기사유
운전성능요청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부터 제31조의20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수수료 (다만, 검사연기신청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검사별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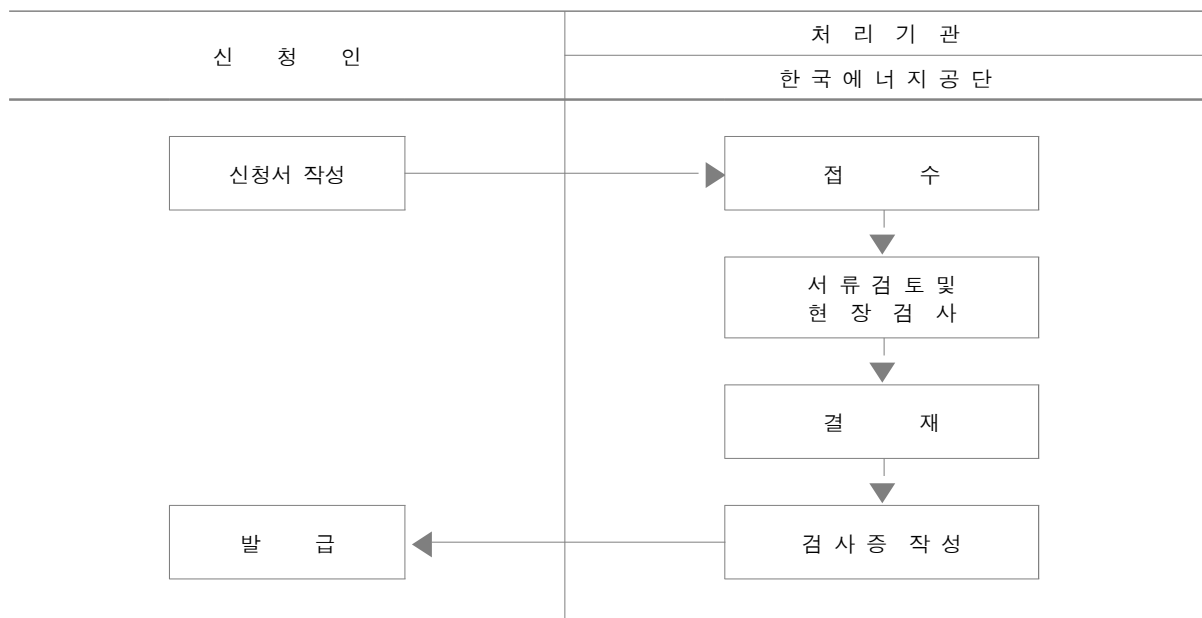
검 사 명	첨 부 서 류
설 치 검 사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계속사용검사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시공업자란 설치검사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의 경우만 적습니다.
2. 검사 요청일란의 운전성능요청일은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검사대상인 기기를 검사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처리기간은 검사 요청일부터 계산합니다.
5.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시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 사 대 상 기 기 설 치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신고 기기	기기명	제조사명	
	설치일자	설치구역	구조검사증번호
	형식	전열면적	용량
	최고사용압력	버너종류	사용연료
관리자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공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신고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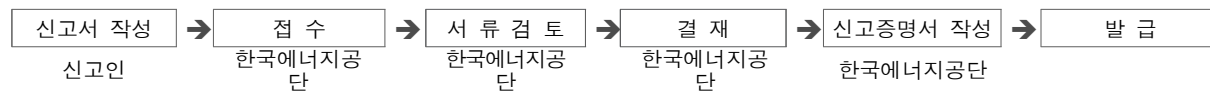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설계도면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000-0000/전송()000-0000
담당부서명:		담 당 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발 신 기 관 장 인

검 사 대 상 기 기 검 사 통 지 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검사종류 및	검사 종류
검사증번호	검사증번호
검사지정일	
검사준비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강철제 보일러 용접검사증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형 식										검사일자									
용 량					t/h, MW					최고사용압력					MPa				
검사 사항	동체 또는 관모음	재 료	길이(mm)	최대안지름(mm)		두께(mm)		끝벌림상태											
								합격											
								합격											
	경판-및 관판	재 료	형 상	안지름(mm)		두께(mm)		높이(mm)		끝벌림상태									
										합격									
										합격									
	노통-또 는 화실	재 료	형 상	최대안지름(mm)		두께(mm)	길이(mm)	공작상태		용접상태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동체의 길이 이음 종류								용 접 이 음 효 율					%					
	비 파 괴 시 험 결 과			합격					용접부 기계적 시험					합격					
	후 열 처 리 결 과			합격					용 접 부 의 외 관					합격					
	용 접 봉 종 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첨부서류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용접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을 첨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6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종 압력용기 용접검사증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형 식				검 사 일 자				
용 량		m ³		최고사용압력		MPa		
검사 사항	동체	재 료	형 상	최대안지름(mm)	길이(mm)	두께(mm)	끝벌림상태	
							합격	
							합격	
	경판	재 료	형 상	굽힘반지름(mm)	갈아 또는 높이(mm)	두께(mm)	끝벌림상태	
							합격	
							합격	
	뚜껑판						합격	
							합격	
	동체의 길이 이음 종류				용 접 이 음 효 율		%	
	비 파 괴 시 험 결 과			합격		용접부 기계적시험		합격
후 열 처 리 결 과			합격		용 접 부 의 외 관		합격	
용 접 봉 종 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첨부서류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용접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을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7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강철제 보일러 구조검사증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형 식										검사일자										
용 량					t/h, MW					최고사용압력					MPa					
검 사 사 항	전 열 면 적					m ²														
	구분	종 류	재 료	바깥지름 또는 폭(mm)		두께(mm)		개 수		부착상태										
	스테인	가셋트								합격										
		관								합격										
		봉								합격										
	수관 또는 연관									합격										
										합격										
										합격										
										합격										
	구 분		재 료	형 식		바깥지름(mm)		두께(mm)												
	관 모 음																			
	과 열 기																			
	절 단 기																			
	수면측정장치		형 식	개수				부착위치		합격										
	수 압 시 험		압 력			MPa		상 태		합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첨부서류		용접검사증(용접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설계도면) 1부(구조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8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종 압력용기 구조검사증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형 식				검 사 일 자	
용 량		m³		최고사용압력 MPa	
검사 사항	동 체		최대안지름 mm	길 이 mm	
	스테이	종 류	재 료	지름 또는 두께 mm	동체, 경판 등에 부착방법
				mm	합격
				mm	합격
	뚜 껑 판 체 결 볼 트		재 료	호칭지름(mm)	개 수
	관	재 료	바깥지름(mm)	개 수	부 착 상 태
					합격
					합격
수 압 시 험		압 력 MPa	상 태	합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첨부서류	용접검사증(용접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설계도면) 1부(구조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9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설치검사증번호 :						
검사대상기기 []				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 업 명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설치구역						
구조검사증번호				설치검사(신고)일자		
기기 명세	기기명(형식)			용 량	t/h, MW, m³	
	최고사용압력	MPa		상용압력	MPa	
계속 사용 검사	안 전			운 전 성 능		
	유효기간	검사원	확 인	유효기간	검사원	확 인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 또는 제31조의2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검 사 대 상 기 기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 종류	자격증 번호	선임 일자	검사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비고					

[별지 제20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재발급신청이유		
검사대상 기기	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구 검사증 원본(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000-0000/전송()000-0000
담당부서명:		담 당 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발 신 기 관 장 인

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검사종류 및	검사종류
검사증번호	검사증번호
불합격 사유	
관련 규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위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기를 개수 또는 보수하여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000-0000/전송()000-0000			
담당부서명:		담 당 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발 신 기 관 장 인			

검 사 대 상 기 기 미 검 사 통 지 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검사 사실을 통지합니다.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검사종류 및	검사종류
검사증번호	검사증번호
미검사 사유	

관련 규정

2.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폐 기 신고서 [] 사용중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구역		(전화번호)			
검사대상기기	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폐기·중지일자

폐기 또는 사용중지 사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한국에너지공단	→	검 토 한국에너지공단	→	대장정리 한국에너지공단	→	확 인 한국에너지공단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설치자 (신고자)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구 설치자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검사대상 기기	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검사유효기간만료일

변 경 사 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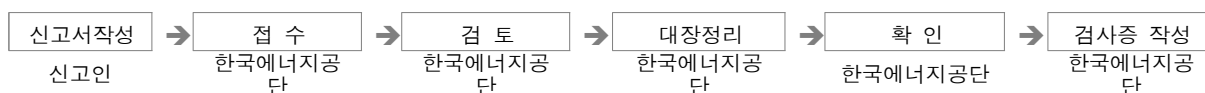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2. 다음의 각 목의 서류 중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다. 상속인(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 임
[] 해 임 신고서
[] 퇴 직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임된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속 업체명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자 격 종 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해임되거나 퇴직 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자 격 종 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 선임일자	<u>설치구역</u>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번호	
[] 해임일자			
[] 퇴직일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
기기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선임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증 2. 설치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이
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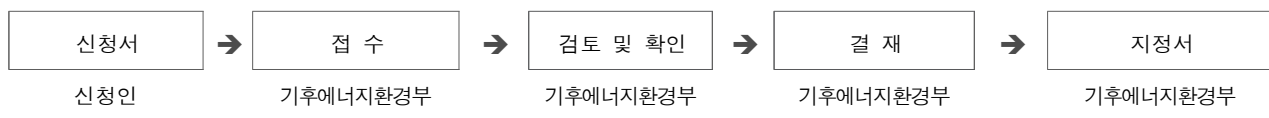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각 1부 2.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없 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별지 제28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산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번호	기기명(형식)	용량	비고

연기사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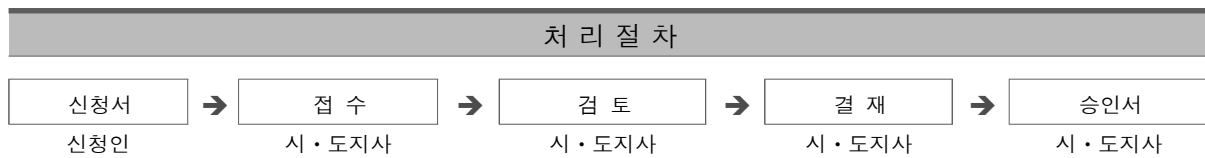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_____	
(전화번호 : _____)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_____)	
관리자 선임기한	
조치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니 관리자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별지 제30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수신자 시·도지사

(경유)

제 목 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

차례	검사 종류	검사 일자	신 청 인				기 기 내 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용도	기기명 (형식)	용량	압력	사용 연료	검사증 번호

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검사대상기기 운전·점검일지 (제31조의28제3항관련)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서명) 년 월 일 시 분
운 전 일 시
(또는 직무대행자)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1쪽)

1. 보일러

검 사 대 상 기 기 명 세					
설치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럩		t/h(MW)	최고사용압력		MPa
점 검 사 항		결 과	점 검 사 항		결 과
1. 외부	설치상태		3. 연소장치	가스버너	
	누설/변형/부식 등		4. 안전장치	화염감시장치	
	배관 및 밸브			저수위 안전장치	
	보온 및 케이싱			온도상한스위치	
2. 계측장치 (부속장치)	수면계			5. 급수장치	압력조절장치
	압력계		압력방출장치 * 작동시험 불필요		
	수위계		급수펌프		
	온도계		6. 운전성능	급수처리	
	유량계			자동급수조절기	
	연소가스분석기			운전상태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		공기비, 외벽 및 배기가스온도		
조 치 사 항					

2. 압력용기

검 사 대 상 기 기 명 세					
설치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m³		최고사용압력 MPa	
점 검 사 항		결 과	점 검 사 항		결 과
1. 외부	설치상태		3. 안전장치 * 작동시험 불필요	안전밸브	
	누설/변형/부식 등			감압밸브	
	배관 및 밸브			경보장치	
	보온 및 케이싱			방출밸브/방출관	
2. 계측장치 (부속장치)	액면계			파열판	
	압력계			배출밸브	
	온도계		4. 기타사항	운전상태	
조 치 사 항					

3. 요로

검 사 대 상 기 기 명 세					
설치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MW		최고사용압력 MPa	
점 검 사 항		결 과	점 검 사 항		결 과
1. 외부	설치상태		3. 연소장치	가스버너	
	누설/변형/균열 등			송풍장치	
	보온 및 케이싱			연료공급배관 등	
2. 계측장치 (부속장치)	온도계		4. 기타사항	부대설비	
	압력계			운전상태	
	연소가스분석기			공기비, 외벽 및 배기가스온도	
	유량계				
조 치 사 항					

4. 검사대상기기 명세서

설치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량(t/h, MW, m³)	최고사용압력(MPa)

비고

1. 검사대상기기 점검 시에는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면제에 관한 기준」 제3편, 제5편, 제6편의 규정에 따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시에는 조업 또는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선임 구역별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선임 구역 내에 검사대상기기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 점검일지는 한 장으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검사대상기기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한 뒤 이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3. 결과 란은 O(적합), X(부적합), /(해당없음)으로 표기
4. 점검 결과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검사대상기기 점검일지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컴퓨터, 단말기 등)를 활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 및 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32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직무대행자 지정서 (제31조의30제1항관련)

지정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	전화번호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직무대행자				
직무대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무대행사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직무대행자 자격증 사본 1부.
------	------------------